#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주영의원 대표발의)

| 의 안<br>번 호 | 16259 |
|---|---|

발의연월일 : 2026. 01. 22.

발 의 자 : 김주영・박 정・임호선
김태선・박홍배・정태호
이주희・문정복・박수현
서영석・진성준・최혁진
장철민・안호영 의원
(14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가 전기설비를 차별 없이 이용하게 할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사업 등 공익성이 높은 사업에 대하여 공익적 가치를 고려하여 우선 접속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고 있음. 그러나 최근 전력망 포화로 인한 계통 접속 제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역시 계통 접속 과정에서 장기간 대기할 우려가 있음.

이에 공익성이 높고 일정규모 이하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하여는 현행법령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우선 접속을 허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위 재생에너지사업 중 계통안정화 설비 또는 기능을 구비한 경우 발전사업 허가기준

을 예외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확대하고, 소규모 재생에너지 설치를 촉진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5항제4호의2 및 제20조제1항 단서 신설).

법률 제 호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제4호의2 중 “전력계통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을 “전력계통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단, 제20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공익적 목적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계통안정화 설비 또는 기능을 갖춘 경우 예외로 한다)”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공익적 목적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전기사업자에 우선하여 그 전기설비에 접속하도록 할 수 있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제7조(전기사업의 허가) ① ~ ④ (생 략) | 제7조(전기사업의 허가) ① ~ ④ (현행과 같음) |
| ⑤ 전기사업의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⑤ ----------.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 4의2. 발전소나 발전연료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u>전력계통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u> | 4의2. ---------- <u>전력계통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단, 제20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공익적 목적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계통안정화 설비 또는 기능을 갖춘 경우 예외로 한다)</u> |
| 5.·6. (생 략) | 5.·6. (현행과 같음) |
| ⑥ (생 략) | ⑥ (현행과 같음) |
| 제20조(전기설비의 이용 제공) ①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는 그 전기설비를 다른 전기사업자등 또는 제32조 단서에 따라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전기사용자에게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u><단서 신설></u> | 제20조(전기설비의 이용 제공) ① ----------. <u>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u> |

| | |
|---|---|
| | 는 공익적 목적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전기사업자에 우선하여 그 전기설비에 접속하도록 할 수 있다. |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